



기울어진 요람에서는 아기를 절대 재우지 마세요!

- 수면 용도 유아용 침대,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 분리
-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은 ‘수면 용도 제품이 아님’ 및 유아용 침대에 ‘폭신한 침구 사용하지 말 것’ 경고 표시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: 김대자)은 ‘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’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‘유아용 침대’의 일부로 존재하던 ‘기울어진 요람’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. 아울러, ‘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’에 ‘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’을, ‘유아용 침대’에 ‘폭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’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다.

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,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,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져,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.

* 美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(CPSC)는 유아 사망 73명(05~19)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 있음을 보고

현재 ‘유아용 침대’의 일종으로 안전관리 중인 ‘기울어진 요람’에 대하여 별도의 ‘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’ 안전기준을 제정하고, 아기의 질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‘유아용 침대’의 경우, ‘폭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’을, ‘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’에는 ‘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’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안전기준 제·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한다.

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가 수면·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,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.

담당 부서	제품안전정책국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	책임자	과 장	정대환 (043-870-5450)
		담당자	연구관	김용석 (043-870-5457)

□ 수면용 · 비수면용 제품의 명확한 구분

- 별도의 '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'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'유아용 침대'의 일부로 존재하던 '기울어진 요람'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

□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등받이 각도 조정

- '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'의 등받이 각도를 10°~80°으로 개정하여 수면용 제품과 구분(EU 기준 부합화)

※ (現) 정적인 요람(0°~80°), 잘 튀어오르는 요람(30°~80°) → (改) 기울어진 요람(10°~80°)

※ 수면 용도인 유아용 침대의 경우, 침대 바닥이 수평이어야 함을 명시

□ 영유아 안전 확보를 위한 표시사항

- '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'에 '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'을, '유아용 침대'에 '폭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'을 명확히 표시

기울어진 요람에서는 절대 재우지 마세요!



기울어진 요람 예시



머리(고개)를 숙인 자세에서

기도압박에 의한 질식



엎드린 자세에서

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

기울어진 요람에서는 **아기 질식사가 우려됩니다!**

현재 안전기준

[유아용 침대]

유아용 침대



기울어진 요람



제·개정 안전기준

[유아용 침대]

수면



<주의 및 경고>
“폭산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”

[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]

비수면



<주의 및 경고>
“아기를 재우기 위한 용도의 제품이 아님”